

수원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9나65641 판결 [공사대금정산금등 청구]

재판경과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638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9나65641 판결

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9. 5. 2 선고 2018가소20691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오창용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20. 3. 24.

판결 선고 2020. 4. 1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 5. 2. 선고 2018가소20691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683,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교회로부터 서울 관악구 D 일대에 위 교회 교육관 신축공사를 수급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6. 23. 피고와 사이에 위 교육관 공사 중 토공사(흙막이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공사기간: 착공 2017. 6. 26. 준공 2017. 10. 15.

5. 계약금액: 20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185,0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금금: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20,000,000원

나. 기성부분금: 목적물(준공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현금 100%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별도 첨부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에 의하여 이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첨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제3조(공사시공 등)

① 을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재정경제원 회계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에 의하여 공사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흙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한 후 원고에게

공사현장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2017. 11.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건을 피고에게 송부하며 일방적으로 정산을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청서'라고 한다).

귀사(피고)와 C교회 교육관 신축공사 중 흙막이공사를 하도급 계약하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정산 내역서를 따로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검토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2017. 11. 9. 오전 10시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정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4,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물량대로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 주요자재를 부족하게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이 주요 자재를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계산하면 29,957,705원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84,449,89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과다 지급된 10,907,603원[= 184,449,898원 - (203,500,000원 - 29,957,70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진행과정에서 철근, 시멘트 등을 적게 사용하여 시공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밀크그라우팅 공사와 인젝션 공사 등 이를 보완하는 공사를 하였는바, 그 공사비에 상당하는 17,776,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시멘트 물량을 빼돌렸거나 주요 자재를 적게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제출한 정산집계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근거로 작성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게다가 원고에 의하여 2017. 9. 7. 서면으로 단 한차례의 지시사항 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그러한 지시사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지속적으로 지시사항이 전달되었을 것임에도 다른 사항에 관한 지시부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요청서 송부 당시 원고 스스로도 흙막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자재물량이 견적서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된

기초사실 및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계약체결 당시 그 공사비 총액이 정해져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용에 자재물량에 따라 이미 정해진 총 공사비를 정산한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첨부되어 있는 하도급계약조건 제3조는 만약 공사가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한다는 조항일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단가계약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③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내역서(견적서)에 기재된 공사항목별 수량, 계약단가, 계약금액은 공사 수행 항목을 특정하고 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이 되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공사금액을 산정하기로 하는 '단가계약'이 아니라 공사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공사비 총액을 정하는 이른바 '총액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실공사비를 추산하여 그 견적액에 이윤을 더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이른바 정액도급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급인으로서의 그의 신용, 자력,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수주한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도급금액과의 차액분을 이득하려고 꾀할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공사의 완성 결과 실공사비가 당초의 공사도급금액의 견적 당시 예상하였던 것보다 적게 소요되었다고 하여 도급인이 그 도급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차액분이 수급인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774(본소), 44781(반소)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금액이 적게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17, 18, 23,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수행한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2017. 9. 7. 이후 하자 부분의 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2017. 11. 6. 피고에게 보낸 이 사건 요청서에도 피고의 공사 부분 하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강태훈

판사안희경

판사김봉남

1) 원고는 자재 미시공으로 인한 자재대금 반환을 구하면서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있어 중복청구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일단 원고 주장 내용을 모두 판단하기로 한다.